제1278호
2011. 6. 23(목)

발행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집인 : 기 획 홍 보 과 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 3가 385-1)
전 화 : **(02)2670-3040**

영등포구보

입법예고

• 제2011-56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고 시

• 제2011-43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 16
• 제2011-44호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고시 ····· 17

공 고

• 제2011-557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 20
• 제2011-558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5
• 제2011-559호 영등포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결신청 열람 공고 ····· 99

인사발령

• 2011. 6. 20 ~ 6. 22 일자 ····· 10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내사랑영등포→영등포행정→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02)2670-3040 / 전송 : (02)2670-3579)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1-56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촉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촉진 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개정된 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중복조항 및 조례의 위임사항 외의 조례시행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을 정비하고, 동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조례에 맞추어 정비(현행 규칙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다. 정보화 교육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근거를 마련하고, 지도감독, 수강료 징수방법, 수강료 감면·환불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14조, 안 제18조)

- 정보화 교육 수강신청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경우 수강신청의 편이성을 위해 신청서 제출절차를 폐지, 수강대상자 및 감면대상자 명단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라. “행정안전부의 행정서식 정비기준”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 그리고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 (별지 서식 제1호 ~ 제4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전산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385-1) 영등포구청 전산정보과 (☏2670-4241 FAX 2670-3578)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시행에”를 “시행에 관하여”로 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
   -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 **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 **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 **사.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라 함은 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앞의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주관부서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정보화 담당부서장”을 “총괄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을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주관부서장 및 예산당당 부서장”을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담당 부서”를 “총괄부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관부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담당부서 장”을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담당부서장”을 “예산담당부서의 장”으로, “주관부서장 및 정보화담당부서장”을 “주관부서의 장 및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 앞의 “제3장 정보화촉진 자문위원 구성"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담당부서장의 추천에 의거 ”을 “총괄부서의 장의 추천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제6조 앞의 “제4장 정보화 자료관리 이용"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조례 제20에 따라‘를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로, ”신청 정보화 자료는“을 ”정보화 자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주관부서장“을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앞의 “제5장 업무표준화 및 정보화 용역"을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조례 제24조제1항에서”를 “조례 제26조제1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화 용역의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공무원을 정보화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정보화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제9조 및 제10조)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주관부서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주관부서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 앞의 “제8장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을 삭제한다.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4조(종전의 제 18조) 및 제18조(종전의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정보화교육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교육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정보화교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 징수·감면 등) ①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수강신청자가 교육 등록할 때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세외수입 절차에 따른다.

②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수강 대상자 명단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증명서 등에 의하여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수강대상자 명단에 별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2조제4항에 따라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보화사업 검토요구서 (제3조제1항 관련)

부서 :	담당팀 :	담당 : (☎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사업목적	
다. 총사업비(천원)	
라. 사업비 산출 근거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예산산정 상세내역서 첨부
마. 계약방법	
바. 사업의 효과	

2. 정보화사업 추진내용

가. 사업 구분	□ 정보화전략계획(ISP) □ 정보시스템 구축(□ H/W장비 도입 □ S/W 개발 □ 패키지(s/w) 구매)
나. 사용 대상	□ 직원(내부) □ 구민(외부) □ 직원+구민(내·외부)
다. 세부 내용	

3. 예산편성 세부내역

단위사업명	세부산출내역(금액)	사 업 비(단위 : 천원)				예산 과목
		합계	기 투자	당해년도	향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정보화사업 검토결과 통보서 (제3조제2항 관련)

작성부서 :	담당팀명 :	담당 : (☎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사업개요	

2. 검토결과

○ 검토의견 등

3. 예산조정내역

(단위:)

요 구 내 역	요 구 액	증 감 액	조 정 액
총 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정보화자료 제공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신청내용		활용목적	
법적근거		자료요구범위 (자 료 내 용)	
제공방식		보관 및 안전관리대책	
기 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환불 신청서 (제18조제4항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택	
				HP	
	주 소				
강 좌 명	교육장 과정				
취소사유					
환불신청액	금 원정 (₩)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인)

위 구민정보화교육을 수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42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책임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행정 국장을 말한다.	<삭 제> ※ 조례 제2조에서 규정
<신 설>	1. "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전산·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유지보수 마.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바.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정보화담당부서장"이라 함은 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는 전산정보과장을 말한다.	2. "총괄부서"라 함은 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삭 제>
제3조(시행계획수립 등) 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또는 계획 변경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검토요구서를 정보화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제3조(시행계획수립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4.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 등이 소요되는 사업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정보화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주관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1. (현행과 같음)
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 여부, 표준화 등	2.(현행과 같음)
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주관부서 및 정보화담당 부서의 자체개발 가능여부 또는 타기관에서 이미 개발한 경우 도입가능 여부	3. ---------- -총괄부서 ----------.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4. (현행과 같음)
제4조(예산확보) ① 주관부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담당부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확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
② 예산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 및 정보화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주관부서의 장 및 총괄부서의 장---------.
제3장 정보화촉진 자문위원 구성	<삭 제>
제5조(자문위원) 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 ① --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② 기술평가 등을 위한_경우에는 구성의 목적에 따라 정보화촉진 위원회 위원, 기술자,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등에서 목적 달성에 적정한 자로 정보화담당부서장의 추천에 의거 구성한다.	② ---------- 총괄부서의 장의 추천으로 ---.
③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4장 정보화 자료관리 이용	<삭 제>
제6조(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정보화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화 자료 제공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정보화 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 자료 등의 제공)** ①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 자료는 ----------.
②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정보화 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
1. 신청 내용의 타당성·정확성·공익성	1. (현행과 같음)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2. (현행과 같음)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3. (현행과 같음)
4. 신청자료의 제공이 시설 및 기술상 가능한지의 여부	4. (현행과 같음)
제7조(수수료 감면 등) 조례 제22조의 수수료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조례 제22조제1호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면제 2. 조례 제22조제2호의 전산기기 등 장애발생으로 기계 사용 시간이 통상적인 사용시간보다 과다하게 소요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 감면비율= 과다 소요시간/전체소요시간	<삭 제> ※ 현행조례 제28조제3항에서 규정
제5장 업무 표준화 및 정보화 용역	<삭 제>
제8조(정보화 용역)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2.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3. 관련부서간 또는 동일 부서내의 복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전산 개발 4. 홈페이지와 관련된 업무 5. 정보화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행정사무자동화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의 재구성 7. 직원 개인의 정보화능력 평가 또는 측정	**제8조(정보화 용역)**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망 구성 9. 기타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보화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역업무의 진행상황 2. 현행업무의 실태조사 3. 타당성 조사 4. 업무 분석 및 시스템 설계 5. 프로그램 개발의 감독 및 개발 완료시 인수 6. 업무개발 완료 보고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 용역의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공무원을 정보화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정보화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6장 정보화 시스템 도입	<삭 제>
제9조(정보화 시스템 도입 설치) 주관부서에서 정보화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담당부서장에게 기기규모, 운영인력, 활용업무 등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타당성을 의뢰하여야 하고, 정보화담당부서장은 타당성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니며 조례의 시행과 관련없음.
제10조(단말장치 설치 운영) ① 주관부서장이 단말장치 설치 및 통신망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담당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하고 설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담당부서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구매 보급하여야 한다.	<삭 제> ※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니며 조례의 시행과 관련없음.
제7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삭 제>
제11조(정보보안) 주관부서장은 정보화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업무처리 규칙」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의 범위 내에서 정보화 관련시설 및 정보 자료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보안)** 주관부서의 장은 ---------- ---------- ---------- ---------- ----------.
제12조(정보자료유출방지) 주관부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주요 정보화 자료를 송수신 할 경우에는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자료유출방지)** 주관부서의 장-------- ---------- ----------.
제8장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	<삭 제>
제13조(수강료 기준) 조례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화 수강료는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시간 및 모든	<삭 제> ※ 조례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현행 규칙 제18조제2항> <현행 규칙 제19조제1항> <현행 규칙 제19조제2항>	**제14조(정보화교육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39조 제4항에 따른 정보화교육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정보화교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수강료 감면 등) 조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8조에서 규정>
제15조(수강료 반환 등)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와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단, 교육기간의 1/2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교육개강일 전까지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교육 시작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하여 반환	<삭 제> ※ 조례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
제16조(수강료 징수방법) 조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수강료는 교육 수강 등록시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세외수입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2. 정보화 담당부서장은 수강료에 대한 회계 장부 및 명단을 비치하고 기록을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삭 제> ※ 안 제18조에서 규정
제17조(운영계획) 구청장은 매년도마다 정보화교실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 조례 제41조에서 규정
<현행규칙 제15조, 제16조를 통합>	**제18조(수강료 징수·감면 등)** ①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수강신청자가 교육 등록할 때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세외수입 절차에 따른다. ②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수강 대상자 명단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증

	명서 등에 의하여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수강대상자 명단에 별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2조제4항에 따라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보화 교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업무를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안 제14조에서 규정
제19조(정보화교실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정보화교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 안 제14조에서 규정

고 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0-43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지적기준점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지적기준점 성과내역

도근점 번 호	표지 재질	좌 표		소재지	비고
		종선좌표	횡선좌표		
8406	철재	445472.47	191994.28	신길동220-103	
8407	철재	445406.76	192010.50	신길동221-52	
8408	철재	445412.96	192051.51	신길동215-28	
8409	철재	445422.00	192087.15	신길동215-28	
8410	철재	445446.19	192186.20	신길동236-30	
8411	철재	445476.74	192303.99	신길동193-23	
8412	철재	445531.36	192518.78	신길동162-4	
원점명				중 부 원 점	
측량성과 보관장소				영등포구 지적과	
설 치 연 월 일				2011.6.15	
비 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1-44호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부여·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고 시 일 : 2011. 6. 23.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구청·동 주민센터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부여·변경 등에 관한 사항
   ○ 도로구간 및 도로명 : 3개 구간 - 붙임 조서 참조

총 계 (구 간)	위 계 구 분			비 고
	대로	로	길	
3	-	-	3	변경 2 폐지 1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 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지적과(☎02)2670-3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구간 및 도로명 결정조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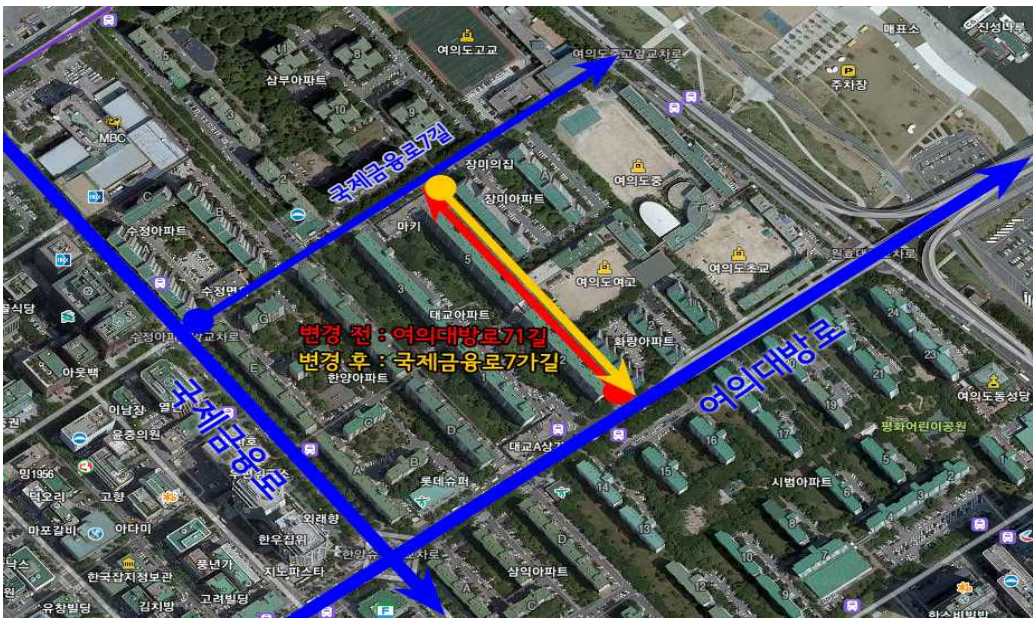
붙임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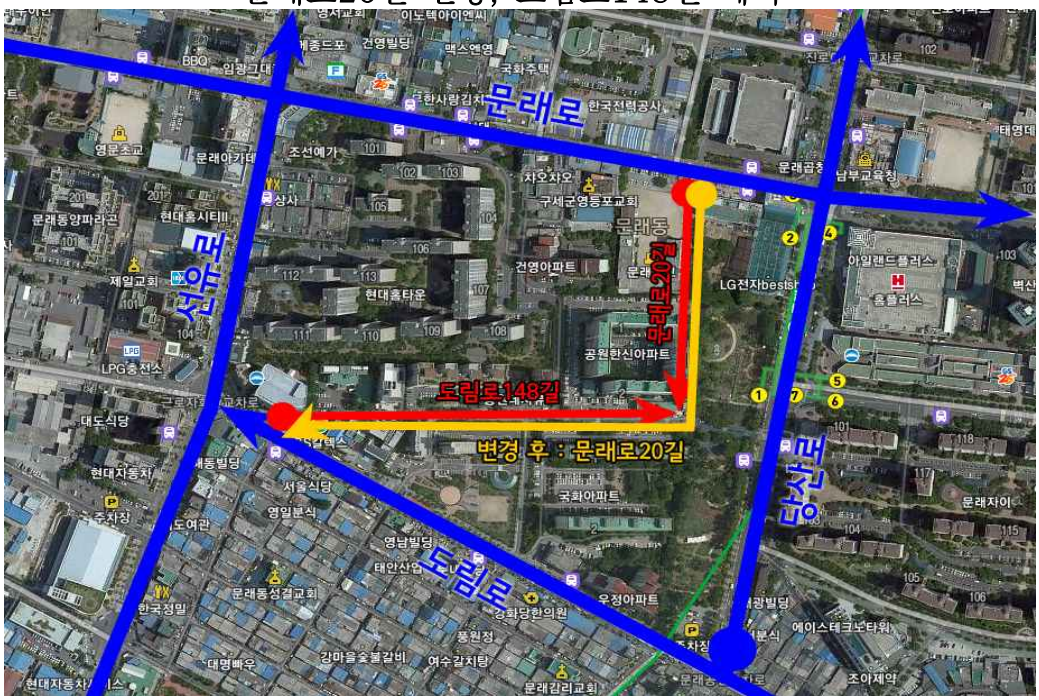
연번	구 분	도로명	도로명관리번호	위계	길이 (m)	폭 (m)	시 점	종 점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부여사유	유사도로명	중심선	관할행정 구역	비 고
										시작 번호	끝번호					
1	변경 전	여의대방로71길	11560-327-0047	길	307	6	여의도동 40-4	여의도동 41-1	20	1	30	여의대방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여의대방로 외 47개	도면참조	영등포구	시·종점 변경
	변경 후	국제금융로7가길	11560-304-0005				여의도동 41-1	여의도동 40-4				국제금융로7길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국제금융로 외 4개			
2	변경 전	문래로20길	11560-314-0004	길	248	8	문래동3가 73	문래동3가 77-2	20	1	26	문래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문래로 외 7개	도면참조	영등포구	도로구간 연장
	변경 전	도림로148길	11560-309-0096	길	378	8	문래동3가 76-3	문래동3가 77-2	20	1	38	도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도림로 외 90개			
	변경 후	문래로20길	11560-314-0004	길	626	8	문래동3가 73	문래동3가 77-2	20	1	62	문래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문래로 외 7개			

붙임2

여의대방로71길 → 국제금융로7가길



문래로20길 연장, 도림로148길 폐지



공 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1-557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93호(2011.4.1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의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여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1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11.6.22 ~ 2011.7.6 (공고일 포함 15일간)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3가 385-1(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26 ~ 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52-232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조합사무실(☎831-4702~3)
3. 공람내용

■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택재개발사업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47-50번지 일대	27,848.0	감) 4.0	27,844.0	-

나)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율 (%)
합 계		27,848.0	감) 4.0	27,844.0	100.0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1,873.0	증)5,971.0	27,844.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5,975.0	감)5,975.0	-	-

※ 신길14구역 측량결과 반영 및 서울시 재정비 위원회 자문결과 반영

다) 정비계획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율(%)	비 고
합 계		27,848.0	감) 4.0	27,844.0	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4,893.0	감)48.0	4,845.0	17.4	
	도 로	2,050.0	감) 0.4	2,049.6	7.4	기부채납
	공 원	1,735.0	감) 2.1	1,732.9	6.2	
	녹 지	1,108.0	증)45.5	1,062.5	3.8	
택지(획지)	소 계	22,955.0	증)44.0	22,999.0	82.6	
	14-1	22,854.0	감)12.2	22,841.8	82.0	공동주택
	14-2	101.0	증)56.2	157.2	0.6	공공청사

※ 신길14구역 측량결과 반영 및 공공청사 면적 조정에 따른 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①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위치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1	53	35	간선도로	1,550 (591)	문래동광장 (신길동 395-1)	신길동광장 (신길동 342-89)	일반도로		건고393 (78.12.7)	도림로
기정	중로	3	63	12~18	집산도로	268 (240)	신길동 335-17 (신길동 335-2)	신길동 342-88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 (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②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4	-	소공원	신길동 335-34 일대	2,004.0 (1,735.0)	감) 2.1	2,001.9 (1,732.9)	서고445 (07.11.29)	-

※ ( )는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내

※ 신길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③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9 일대	1,295.0 (1,108.0)	감) 45.5	1,249.5 (1,062.5)	서고445 (07.11.29)	-

※ ( )는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내

※ 신길14구역 측량결과 반영 및 공공청사 면적변경 에 따른 연결녹지 면적 조정

④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	신길동 349-3 일대	101.0	증) 56.2	157.2	서고445 (07.11.29)	파출소

※ 신길14구역 측량결과 반영 및 공공청사 면적조정에 따른 변경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②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명칭	구역구분 면적(㎡)	가구 또는 획지 구분 명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면적(㎡)	위치	주1)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평균층수/최고층수
기정	신길14 재정비 촉진구역	27,848.0	14-1	22,854.0	영등포구 신길동 347-50번지 일대	52,315.09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18.87	228.91	20 / 26
			14-2	101.0	영등포구 신길동 349-3번지 일대	202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파출소)	60%이하	200%이하	-
변경	신길14 재정비 촉진구역	27,844.0	14-1	22,841.8	영등포구 신길동 347-50번지 일대	57,748.66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19.41	252.82	22 / 28
			14-2	157.2	영등포구 신길동 349-3번지 일대	310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파출소)	60%이하	20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합 계	분 양(전용면적, ㎡)				임 대(전용면적, ㎡)			
			소 계	109.50	84.94	59.95	소 계	39.98	49.70	59.95
세대수	기정	475	389	141	190	58	86	36	36	14
	변경	573	467	92	190	185	106	44	46	16
비율	기정	100.00	81.89	29.68	40.00	12.21	18.11	7.58	7.58	2.95
	변경	100.00	81.50	16.06	33.16	32.28	18.50	7.68	8.03	2.79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6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 이상
- 임대주택 건립비율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길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주1)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기준용적률 20%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부분은 주택규모 60㎡(전용면적) 이하로 건설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 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14	22,955.0	감) 4.0	22,951.0	14-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47-50번지 일대	22,854.0	감) 12.2	22,841.8	공동주택
				14-2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49-3번지 일대	101.0	증) 56.2	157.2	공공청사 (파출소)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 면 적(㎡)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	-	-	4,067.78	86	39.98㎡, 49.70㎡, 59.95㎡	기정
-	-	-	5,004.52	106	39.98㎡, 49.70㎡, 59.95㎡	변경

- 임대주택 건립비율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 기준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부분은 17%이상 확보
- 임대주택 평형배분 계획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4.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다만,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1-558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목록>>

연번	안 건 명	주관부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담당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기획홍보과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자치행정과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산정보과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보건지원과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가정복지과
10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재 무 과
11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신길6구역)	도시계획과
12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신길14구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규정을 명시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 인적자원의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 인적자원의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나.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 4. 7 ~ 4. 27)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직무를 통할”을 “업무를 총괄”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구”를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 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7. (생 략) ② (생 략)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그 밖의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 ----------업무를 총괄----.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③ (생 략) ④ 위원장은 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영등포구(이하 "구" 라고 한다) ---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범위에서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도입 후 10여년이 경과되어 서비스헌장의 운영 근거인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훈령 개정의 취지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한 헌장 운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종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로 변경

나.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헌장부서의 장'으로 지정 하고 책임과 권한 강화 (안 제4조 제1항)

다. 헌장을 매년 1회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여건의 변화, 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마다 개선하도록 함. (안 제4조 제4항)

라.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시 헌장 공표 방법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토록 함 (안 제7조 제1항)

마. 헌장심의위원회 조항을 삭제

바. 헌장총괄부서장의 장의 운영실태 평가 사항 신설(안 제10조)

- 헌장총괄부서의 장은 헌장 제·개정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헌장 운영 실태를 평가 및 환류

사. 헌장업무 관련 활동을 매년 백서로 발간해야하는 의무규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서비스헌장 규정 (대통령훈령 257호 '09.9.4)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3.31~4.20) 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제정**”을 “**제정·운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고객”이라 함은”을 “”고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을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고객만족도”라 함은”을 “”고객만족도”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를 “**구의 사무 중 일부를**”로 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행정서비스헌장” 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헌장의 제·개정) ①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구의 담당관 및 과와 구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헌장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되, 부서 또는 기관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 또는 여러 기관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다.

②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헌장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고객의 요구사항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헌장을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헌장부서의 장은 행정여건의 변화, 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중 "**구청장이**"를 "**헌장부서의 장은**"으로, "각호에서"를 "각 호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보에 게재하고**"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을 "**헌장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앞의 "제3장 헌장의 이행 및 사후관리"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헌장의 이행) ①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고객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선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운영실태 평가 등) ① 구의 헌장 제정 및 개정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헌장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헌장의 운영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헌장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만족도의 내용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③ 헌장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헌장에 반영하거나 헌장 관련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또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헌장총괄부서의 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헌장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발간하여 공표하되**"를 "**발간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의 “제4장 고객불만사항의 처리 및 보상” 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헌장제정부서의 장**”을 “**헌장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헌장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헌장에서**”를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에서**”로, “**보상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분야별 헌장으로 정하되 보상은 5,000원 이내의 보상품으로 한다.**”를 “**헌장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정·운영---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영등포구청과 그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주민과의 약속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구민과 구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영등포구청과 그 소속기관이 고객의 생활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구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구민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 ---------- ---------- ----------. 2. "고객"이란---------- ---------- ----------. 3.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 ---------- ---------- 4. "고객만족도"란---------- ---------- ---------- ----------.
제3조(적용대상기관) ① (생 략) ②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의 사무 중 일부를--- ---------- ----------.
제2장 행정서비스헌장	<삭 제>
제4조(헌장의 제·개정)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제4조(헌장의 제·개정) ①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구의 담당관 및 과와 구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헌장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되, 부서 또는 기관별로 하나 또는 여러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 또는 여러 기관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③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직업·산업분야·사회부문 등을 고려하여 업무영역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④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헌장은 매년 1회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의 변화·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헌장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고객의 요구사항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헌장을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헌장부서의 장은 행정여건의 변화, 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구청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헌장 부서의 장은----------각 호에서----------. 1. ~ 7. (현행과 같음)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게재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②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② ----------헌장부서의 장.----------.
제8조(헌장심의위원회의)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의 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위원은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구의원,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총괄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⑥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헌장의 이행 및 사후관리	<삭 제>
제9조(헌장의 이행) ①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헌장 이행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선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 산하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이행) ①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고객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선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객만족도조사 및 평가) ① 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②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자료로 활용한다. ③ 고객만족도 조사는 년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④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실태 평가 등) ① 구의 헌장 제정 및 개정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헌장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헌장의 운영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헌장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만족도의 내용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③ 헌장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헌장에 반영하거나 헌장 관련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또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헌장총괄부서의 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헌장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기관 등에 우대조치) 구청장은 헌장 관련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백서의 발간) ① 구청장은 헌장 관련 업무 활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구정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백서의 발간) ① ---------- ----------**발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구정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협조요청) 행정서비스업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4장 고객불만사항의 처리 및 보상	<삭 제>
제14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①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술·전화 서면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 불만사항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객불만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4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① 헌장부서의 장---------- ② 헌장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고객불편처리옴부즈맨 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고객불편사항의 조사 및 처리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불편처리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옴부즈맨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의 위촉·해촉·자격·보수·임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6조(보상) 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서비스관련 고객에게 보상한다. ②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각 분야별 헌장으로 정하되 보상은 5,000원이내의 보상품으로 한다.	제16조(보상) ①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 ② ----------헌장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교육·복지·사람중심의 새영등포」 라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운영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 신설 및 폐지

○ 홍보관광과 신설 및 도시디자인과 폐지

나. 과 이관

○ 문화체육과 : 복지국 ⇒ 행정국
○ 기획예산과 : 행정국 ⇒ 재정국
○ 전산정보과 : 행정국 ⇒ 재정국
○ 환 경 과 : 도시국 ⇒ 복지국
○ 부동산정보과 : 재정국 ⇒ 도시국

다. 과 명칭 변경

○ 기획홍보과 ⇒ 기획예산과
○ 지적과 ⇒ 부동산정보과

라. 과 신설·폐지·이관에 따른 국별 업무 이관

○ 제5조(행정국)제2항 제5호, 제6호, 제15호를 제6조(재정국)으로 이관
○ 제6조(재정국)제2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8조(도시국)으로 이관
○ 제7조(복지국)제2항 제5호를 제6조(재정국)으로 이관
○ 제7조(복지국)제2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5조(행정국)으로 이관
○ 제8조(도시국)제2항 제9호, 제10호를 제9조(건설국)으로 이관
○ 제8조(도시국)제2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제7조(복지국)으로 이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첨부
(2) 입법예고 : 생략(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홍보관광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청사관리, 문서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인사, 후생복지, 직무분석, 공무원 평가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안의 심사, 소송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5. 공보와 보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 업무의 총괄과 동 행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13. 과학육성에 관한 사항
14. 문서, 관인, 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15. 창구민원에 관한 사항
16.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7.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18.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19. **문화재에 관한 사항**
20.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21. **생활체육과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22.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재정국) ① 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 세무과, 부과과를 둔다.

② 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계약·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5. 소비자 보호,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7. 상공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국제금융특구지정 추진 및 금융도시 육성전략 계획 수립
9. 고용안정과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10.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징수와 구 세입의 총괄
12. 세외수입 과징업무의 분석평가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4.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청소과, 환경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생활보장, 의료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 여성보호와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지도에 관한 사항
7. 다문화업무에 관한 사항
8.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0.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11. 대기·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2. 소음·진동 대책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3.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관리, 주택개량,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무허가건물과 위험건축물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
5. 영등포디자인 개선 및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6.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착공·준공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10. 공원의 개발 및 관리와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11.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13. 토지관리·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4.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15.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국) ① 건설국에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를 둔다.
② 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가로순찰과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관리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5. 도로계획사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6.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가로등·보안등·지하도·지하광장·터널시설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9. 하수시설의 계획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하천·유수지관리 및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11.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난 복구대책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교통 종합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14. 교통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16.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과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7. 교통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8. 교통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 을 "재정국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국장” 을 “행정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국장" 을 "재정국장" 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 중 "행정국장" 을 "재정국장" 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 을 "재정국장" 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국장" 을 "재정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행정국장" 을 "재정국장" 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 을 "재정국장"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기획홍보과" 를 "기획예산과" 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국장" 을 "재정국장" 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홍보과장" 을 "홍보관광과장" 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홍보과장" 을 "홍보관광과장" 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홍보과" 를 "총무과"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홍보과장" 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홍보과장" 을 "총무과장" 으로, "기획홍보과" 를 "총무과" 로 한다.

제7조 중 "기획홍보과장" 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자활주거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활보장담당주사" 를 "자활주거담당주사"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같은항 제3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 을 "건설국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시설담당주사" 를 "교통개선담당주사" 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기획홍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청사관리, 문서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인사, 후생복지, 직무분석, 공무원 평가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의 심사, 소송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5. 구정의 기획·조정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보와 보도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 업무의 총괄과 동 행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1. 문서, 관인, 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12. 창구민원에 관한 사항 13.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4.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15.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6.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17.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18. 과학육성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홍보관광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청사관리, 문서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인사, 후생복지, 직무분석, 공무원 평가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의 심사, 소송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5. 공보와 보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 업무의 총괄과 동 행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13. 과학육성에 관한 사항 14. 문서, 관인, 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15. 창구민원에 관한 사항 16.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7.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18.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19. 문화재에 관한 사항** **20.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21. 생활체육과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22.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재정국) ① 재정국에 재무과, 지역경제과 , 세무과, 부과과 및 **지적과**를 둔다. ② 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2. 물품관리·계약·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보호,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재정국)** ① 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 세무과, 부과과를 둔다. ② 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4.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5. 상공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6. 국제금융특구지정 추진 및 금융도시 육성전략 계획 수립 7. 지방세 징수와 구 세입의 총괄 8. 세외수입 과징업무의 분석평가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0.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12. 토지관리·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3.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14.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계약·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5. 소비자 보호,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7. 상공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국제금융특구지정 추진 및 금융도시 육성전략 계획 수립 **9. 고용안정과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10.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징수와 구 세입의 총괄 12. 세외수입 과징업무의 분석평가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4.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및 청소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생활보장, 의료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 고용안정과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6. 여성보호와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지도에 관한 사항 **8. 관광진흥과 문화재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10. 생활체육과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11.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2.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청소과, **환경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생활보장, 의료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 여성보호와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지도에 관한 사항 **7. 다문화업무에 관한 사항** 8.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0.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11. 대기·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2. 소음·진동 대책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3.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및 **환경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관리, 주택개량,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관리, 주택개량,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2. 무허가건물과 위험건축물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 5. 영등포디자인 개선 및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6.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9. 옥외광고물 관리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1. 건축허가·착공·준공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12. 공원의 개발 및 관리와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13.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14. 대기·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5. 소음·진동 대책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6.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17.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2. 무허가건물과 위험건축물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 5. 영등포디자인 개선 및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6.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착공·준공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10. 공원의 개발 및 관리와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11.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13. 토지관리·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4.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15.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국) ① 건설국에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및 주차문화과를 둔다. ② 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가로순찰과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4. 도로계획사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5.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가로등·보안등·지하도·지하광장·터널시설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8. 하수시설의 계획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천·유수지관리 및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10.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난 복구 대책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국)** ① 건설국에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를 둔다. ② 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가로순찰과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관리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5. 도로계획사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6.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가로등·보안등·지하도·지하광장·터널시설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9. 하수시설의 계획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하천·유수지관리 및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11.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12. 지역교통 종합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12.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난 복구 대책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통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지역교통 종합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14. 교통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과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16. 교통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6.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과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7. 교통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7. 교통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8. 교통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1조(제정의 목적)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

나. 제6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공고)
예산편성방향 및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절차 등을 포함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함

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0인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라. 제11조(위원회 기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

마.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은 재직기간, 위촉직은 2년의 임기(단, 1회에 한해 연임가능)

바. 제14조(위원회 운영원칙)

사. 제15조(분과위원회 구성)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 구성이 가능함

아.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위원회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1.4.21 ~ 5.11) 결과 : 제출 의견 3건 접수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동별 1명씩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구청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의 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 등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관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표준안의 취지와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게 우리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관련 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

나. 외국인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 (안 제2조)

다. 외국인주민에게 지역주민과 동등한 지위 부여 (안 제3조)

- 구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라. 구의 책무 신설 (안 제4조)

-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 지원 및 적절한 시책 추진,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

마.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근거 구체화 (안 제4조의2)

- 매년 자치단체장이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

바.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로 변경 운영 (안 제7조~제12조)

-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 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에 민간단체 관계자 및 외국인주민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지역 공동사안 등 자문

사.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3조~제14조)

아. 외국인주민자문회의 신설 (안 제15조)

- 행정의 파트너로서 수요자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반영토록 외국인주민 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자.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삭제)

차. 기타 지원범위 및 조문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1.5.26~6.15)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를 “영등포구”로,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필요한”을 “필요한 행정적”으로, “생활할”을 “정착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제2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을 “”외국인주민 가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공시설 이용)”을 “(외국인주민의 지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의”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산과”로, “각종”을 “각종 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계획)”을 “(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를 “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로, “자격이 없는”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지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 사업
7. 보건의료
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2항 중 “편성”을 “편성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을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영등포구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그”를 “다문화가족지원 연계사항 및 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11명 이내의 위원”을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교단체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및 구의원과 교수·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담당국장이 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을 “구청장 또는 위원장”으로,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회의를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1인을 두되, 간사는 거주외국인”을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또는 변경되었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의 제목 “(수당 등)”을 “(위원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외부위원”을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여비 등을”을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거주외국인 복지관 설치 운영”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외국인”을 각각 “외국인주민”으로, “거주외국인 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복지관”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관은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은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복지관의 시설”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관의 시설,”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거주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및 지원”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외국인주민자문회의의 설치)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영등포구 외국인주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제목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지원)”을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필요한”을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운영”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으로, “지도· 점검할”을 “지도·점검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8조 제목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을 “(세계인의 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세계인”을 “다문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학술행사”를 “연구발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의한 행사를”을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로, “대행하게”를 “행사를 추진하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를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로 한다.

제19조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외국인중”을 “외국인주민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과 모범구민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거주외국인 지원업무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영등포구 ----------외국인주민----------필요한 행정적 ----------정착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뜻은 ----------.
<신 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
3.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제3조(공공시설 이용)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산과 ----------각종 행정 ----------.
<신 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외국인 거주지역을	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
1.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삭 제>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삭 제>
3.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 외국인 가정	<삭 제>
4.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삭 제>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각 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 ----------.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소양 또는 전문교육, 보육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처리·인권옹호 및 생활법률, 민원처리 안내상담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보건의료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역사 문화제도 교류·체육행사 개최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7. 기타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7. 보건의료**
	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편성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제2장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제2장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제7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기능)----------영등포구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다문화가족지원 연계사항 및 그 --------**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구성 등) ① 협의회 ---------- 13명 이내 ---------- 각 호의 사람 ---------- 위촉한다.**
1. 교육청·경찰서·지방노동청·출입국관리사무소·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영등포구 외국인주민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소속 관계관**

2. 구청 공무원중 국장급이상 2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교단체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및 구의원과 교수·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거주외국인·구의원·외국인 지원 단체 관계자 중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장) ① 협의회 ---------- 담당국장이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구청장 또는 위원장---------경우에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 ---------- 개의하고----------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 ----------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1. 협의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3. 협의회 ----------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 협의회 ---------
<신 설>	제11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또는 변경되었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협의회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
제3장 거주외국인 복지관 설치 운영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 외국인주민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외국인주민 지원시설----------.
② 복지관은 거주외국인을 위한 교육 및 문화활동, 보건의료지원, 상담,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은 외국인주민----------.
제14조(운영) ① 복지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①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② 복지관의 시설, 이용방법, 시간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
제4장 거주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4장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및 지원
제15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거주외국인 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외국인주민자문회의의 설치)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영등포구 외국인주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지원)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 외국인주민 --------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지원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외국인주민----------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범위----------.
③ 구청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지도·점검하게 할 -------.
④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밖에 ----------
제18조(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① 구청장은 세계인 주간(매년5월20일부터 1주일)을 맞이하여 주민과 거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술행사 및 국제교류행사	2. 연구발표 ----------
3. 명예구민증서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3. ----------외국인주민 ---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4. ---- 외국인주민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행사를 추진하게----.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
제19조(포상)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제19조(포상)** --------- 외국인주민 ----------.

수 있다.	----.
제20조(표창수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생 략) 2. 외국인중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0조(표창수여)** ① ----------.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주민 중** ----------
②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과 모범구민 표창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외국인주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제21조(명예구민)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업무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제21조(명예구민)** ① ----------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 ----------.
<신 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관내 결혼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최근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추세인 바, 조례 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나. 다문화가족 정의 및 범위확대 (안 제2조)

- 다문화가족 : 날때부터 한국인+결혼이민자등 → 한국인+결혼이민자등

다. 구의 책무 (안 제3조)

- 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 및 이에 따른 시책추진, 전담기구와 공무원 구성 등

라. 지원의 범위 구체화 (안 제4조)

-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지원 등

마.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근거 구체화 (안 제5조)

- 매년 자치단체장이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 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에 민간단체 관계자 및 외국인주민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지역 공동사안 등 자문
-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로 대체하여 운영

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정 근거 마련 (안 제7조)

아. 다문화가족지원 공로자에게 표창수여 (안 제8조)

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단체에 대한 지원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1.5.26~6.15)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영등포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영등포구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

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운영) ① 영등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로 대체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 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 구민 표창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정보제공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근거 및 마일리지제 운영의 보완 등 홈페이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제명)

나. 홈페이지 정보제공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를 통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근거를 마련(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홈페이지 활성화 및 구정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마일리지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용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조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1.5.19 ~ 6. 8,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홍보와 구민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터넷"이라 함은"을 ""인터넷"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홈페이지"라 함은"을 ""홈페이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용자"라 함은"을 ""이용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라 함은"을 ""정보"란"으로 하며, 제6호 중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전자정부법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전자민원창구"라 함은"을 ""전자민원창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개인정보"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아이디"라 함은"을 ""아이디"란"으로, "인터넷 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비밀번호"라 함은"을 ""비밀번호"란"으로, "인터넷 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모바일시스템"이라 함은"을 ""모바일시스템"이란"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인터넷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인터넷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시스템"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보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인터넷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터넷시스템을"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를"로, "정보화 부서의"를 "정보화부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홈페이지 운영·관리 실태"로 한다.

제10제1항 중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 등에 접수한 민원은 위 각각의 동법 시행령에 정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를 "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를 "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전자서명법에 의해"를 " 「전자서명법」 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민원상담관을"을 "담당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를 "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8조에 따라"를 "「전자정부법」 제3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활성화 또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mileage)를 운영할 수 있다.

1.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2. 모사전송 서비스
3. 온라인 자격증 강좌 수강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부여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유효기한,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인터넷시스템을"을 "인터넷 홈페이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인터넷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터넷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스템"을 "홈페이지" 로, 기타"를 "그 밖에"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안업무처리규칙의 규정에 의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 (조례 제15조의2제3항)

유 형	마일리지	비 고
회원가입	500점	첫 가입시 한번
기존회원	500점	첫 오픈시 한번
홈페이지 로그인	30점	1일 1회 첫 로그인시
정책 제안자	1,000점	제안채택자
정책 참여자	100~1,000점	추천수에 따라 차등지급
설문조사참여자	200점	참여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의한 인터넷민원 접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 홍보와 구민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6.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전자정부법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8.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9. "아이디"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기호를 말한다.	제2조(정의)----------뜻은 --------. 1. "인터넷"이란 ---------- ---------- ---------- <삭 제> 3. "홈페이지"란 ---------- ---------- --------. 4. "이용자"란 ---------- ---------- 5. "정보"란 ---------- ---------- ---------- ---------- 6.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

현 행	개 정 안
10.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11. "모바일시스템"이라 함은 휴대폰 또는 휴대정보단말기(PDA)등 이동성을 가진 기계장치를 말한다.	10. "비밀번호"란 ----------인터넷 홈페이지---------- 11. "모바일시스템"이란 ----------
제2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	**제2장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5. (생 략) 6. 기타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 각 호 ---------. 1.~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③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 ④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보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구청장은 인터넷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보공개청구) ① 이용자는 구청장에 게 제5조에 의한 정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7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생 략)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8. (생 략) 9.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제7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1.~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 ----------
8조(담당부서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담당관·과·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정보화부서장은 담당관·과·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담당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 인터넷 홈페이지를 ---------- -----정보화부서의 --------- ----인터넷 홈페이지를 -----. ② ---------- ---------- 홈페이지 운영·관리실태 ---------- ---.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 등에 접수한 민원은 위 각각의 동법 시행령에 정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제공한다. 1.~3. (생 략)	②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는 ----------. ③ ---------- 각 호----------. 1.~3. (현행과 같음)
제11조(전자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③ (생 략) ④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⑥ (생 략) ⑦ 인터넷 민원처리에 있어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증명민원서류 전송 및 민원처리결과통지에 있어 전자관인의 적용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전자민원처리)** ① --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⑤~ ⑥ (현행과 같음) ⑦ ----------전자서명법」에 따라---------.
제12조(민원처리의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 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③ (생 략)	**제12조(민원처리의 공개)** ① ---------- 제10조제1항에 따라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민원상담)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민원상담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제13조(민원상담)** ① ----------담당자를 ----------. ② (현행과 같음) ③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

제14조(대화방 운영) ① (생 략)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③ **가명으로 접수된 의견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대화방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참여마당 운영)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인터넷 투표·설문 및 정책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의견수렴 창구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웹메일 가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별표 1과 같이 차등화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부여받은 마일리지는 문자메세지 서비스 1건당 30점, 팩스메세지 서비스 A4용지 1장당 50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참여마당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자정부법」 제31조에 따라 ---------- <삭 제> <삭 제>
<신 설>	제15조의2(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활성화 또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mileage)를 운영할 수 있다. 1.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2. 모사전송 서비스 3. 온라인 자격증 강좌 수강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부여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유효기한,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수수료) ①~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제2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수수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생 략)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한 경우 ③~ ④ (생 략)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 인터넷 홈페이지를 ----------. ② ----------각 호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인터넷시스템의 보안)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안업무처리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안) ① ----------인터넷 홈페이지 ----------. ② (현행과 같음) ③ 홈페이지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람중심! 건강도시 영등포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 사항을 규정

나.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라.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설치·운영 가능

마. 제10조(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1.5.19 ~ 6.8)결과 : 제출의견 1건 접수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 놀이터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안 제1조)

나.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안 제3조)

-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다.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안 제5조)

라.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안 제9조)

마.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안 제11조)

바.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1.5.19 ~ 6. 8,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정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센터 운영 관련 공무원과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운영 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수탁약정서,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2. 주요내용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소 계	의료급여	주민소득	주차장
예 산 액		395,860	345,681	50,179	517	1,505	48,157
예 산 현 액		410,159	359,885	50,274	517	1,505	48,252
세입결산액		397,562	348,035	49,527	532	1,700	47,295
세출결산액		340,531	326,193	14,338	388	182	13,768
잉 여 금		57,031	21,842	35,189	144	1,518	33,527
잉여금내역	명시이월	3,634	3,634	-	-	-	-
	사고이월	7,062	6,943	119	-	-	119
	보 조 금 사용잔액	4,550	3,585	965	123	-	842
	순 세 계 잉 여 금	41,785	7,680	34,105	21	1,518	32,566
집행잔액		58,932	23,115	35,817	129	1,323	34,365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관한 의견청취의 건

1. 제 안 이 유

○ 신길6 존치정비구역이 2010년 촉진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되어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기준용적률 20%를 상향하는 등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영등포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6,266	-	36,266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0,520	-	10,520	29.0	-
	도 로	3,736	증) 1,646	5,382	14.8	기부채납
	공 원	1,491	-	1,491	4.1	
	녹 지	5,229	감) 1,646	3,583	9.9	
	공공공지	64	-	64	0.2	
택 지 (획 지)	소 계	25,746	-	25,746	71.0	-
	6-1	25,690	-	25,690	70.8	공동주택
	6-2	56	-	56	0.2	학 교 (기부채납)

(2) 용도지역 변경계획

- 신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기 결정된 6존치정비구역 정비계획(안)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원안 반영 (2종일반주거지역(7층)⇒2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면 적 (㎡)			비 율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6,266	-	36,26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5,734	감) 35,73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89	증) 35,734	36,023	99.3
제3종일반주거지역	243	-	243	0.7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①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359 (210)	신길동 638	신길동 2093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357 (210)	신길동 638	신길동 2093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선형정리
기정	소로	2	5	8	집산도로	294 (180)	신길동 621-5 (신길동 510-2)	신길동 2363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
변경	중로	3	6	12	집산도로	291	신길동 621-5 (신길동 510-2)	신길동 2363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폭원확장
신설	중로	3	7	12	집산도로	112	신길동 625-3	신길동 626	일반도로	-	-	폭원확장 및 시설번호부여

※ (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② 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	-	소공원	신길동 2306 일대	1,636.2 (1,491)	-	1,636.2 (1,491)	서고445 (07.11.29)	5구역 :145.2㎡

※ (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③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66 일대	1,360	감) 530	830.0	서고445 (07.11.29)	-
변경	1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77 일대	1,789.1 (1,760)	감) 385	1,404.1 (1,375)	서고445 (07.11.29)	5구역: 29.1㎡
변경	1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560 일대	1,294.4 (1,062)	감) 447.1	847.3 (629)	서고445 (07.11.29)	5구역: 218.3㎡
변경	1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335 일대	1,047	감) 298	749.0	서고445 (07.11.29)	-

※ (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④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	공공공지	신길동 567 일대	269 (64)	-	269 (64)	서고445 (07.11.29)	-

※ (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⑤ 학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신길7동 550 일대 (신길동 568)	22,273.0 (56)	-	22,273.0 (56)	서교위76 (88.12.21)	대방

※ (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길6 재정비촉진구역	36,266	-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510번지 일대	194	-	-	194	-	-

②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1)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신길6 존치 정비구역	36,266	6-1	25,690	영등포구 신길동 510번지 일대	61,630.3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26	239.90	18 / 2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합 계	분 양(전용면적)				임 대(전용면적, ㎡)			
		소 계	109.50	84.94	59.95	소 계	39.98	49.70	59.95
세대수	556	455	164	223	68	101	42	42	17
비율	100.00	81.84	29.50	40.11	12.23	18.16	7.55	7.55	3.06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6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 이상
• 임대주택 건립비율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변경	신길6 재정비 촉진구역	36,266	6-1	25,690	영등포구 신길동 510번지 일대	68,104.19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0 이하	265.1 이하	20 / 2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합 계	분 양(전용면적)				임 대(전용면적, ㎡)			
		소 계	85㎡ 초과	60~ 85㎡	60㎡ 이하	소 계	40㎡ 이하	40~ 50㎡	50~ 60㎡
세대수	635	520	163	221	136	115	47	47	21
비율	100.00	81.89	25.67	34.80	21.42	18.11	7.40	7.40	3.31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6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 이상
• 임대주택 건립비율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 기준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부분은 17%이상 확보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길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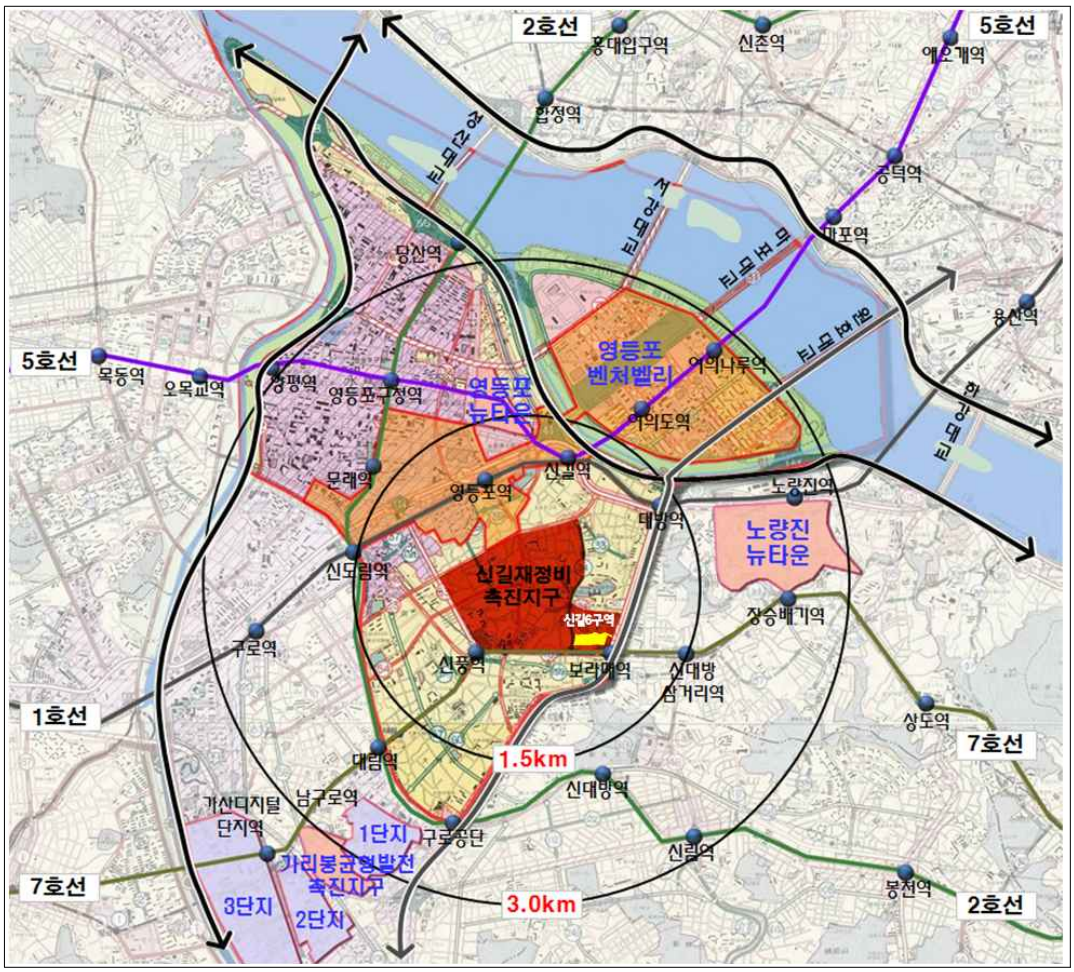
주1)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기준용적률 20%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부분은 주택규모 60㎡(전용면적) 이하로 건설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름)

3.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의 필요성
○ 신길6구역 일대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임
○ 따라서 2010년 촉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소형주택을 확대하는 등 촉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함

4. 추 진 경 위
○ 2005. 12. 16 : 신길뉴타운 지구지정 고시
○ 2006. 10. 19 : 신길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시범지구 선정
○ 2007. 11. 29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지정고시
○ 2009. 08. 13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신길11구역
○ 2009. 09. 10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신길7구역
○ 2010. 01. 17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신길12구역
○ 2010. 04. 08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신길3구역
○ 2010. 07. 15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신길5구역
○ 2011. 04. 14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신길8구역
○ 2010. 09. 13 :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1차 자문
○ 2010. 11. 17 :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자문(총괄MP 및 자문MP 자문)
○ 2011. 01. 21 : 주민설명회
○ 2011. 03. 14 :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2차 자문
○ 2011. 04. 11 :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3차 자문
○ 2011. 04. 26 : 도시재정비 위원회 자문
○ 2011. 05. 06 ~ 20 : 주민공람

5. 우리구 의견
○ 신길6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역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통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 치 도


2호선
홍대입구역
신촌역
5호선
애오개역
합정역
공덕역
당산역
대포역
용산역
5호선
목동역
오목교역
양평역
영등포구청역
영등포 뉴타운
영등포 벤처밸리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문래역
영등포역
신길역
노량진역
대방역
노량진 뉴타운
신도림역
신길재정비 촉진지구
신길6구역
장승배기역
구로역
신풍역
보라매역
신대방 삼거리역
1호선
상도역
7호선
대림역
1.5km
신대방역
가산디지털 단지역
남구로역
1단지
구로공단
신림역
가리봉균형발전 촉진지구
3단지
2단지
3.0km
봉천역
7호선
2호선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관한 의견청취의 건

1. 제 안 이 유

○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기준용적률 20%를 상향함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영등포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 신길14구역 측량결과 반영 및 공공청사 면적조정에 따른 변경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율(%)	비 고
합 계		27,848.0	감) 4.0	27,844.0	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4,893.0	감) 48.0	4,845.0	17.4	
	도 로	2,050.0	감) 0.4	2,049.6	7.4	기부채납
	공 원	1,735.0	감) 2.1	1,732.9	6.2	
	녹 지	1,108.0	감) 45.5	1,062.5	3.8	
택지(획지)	소 계	22,955.0	증) 44.0	22,999.0	82.6	
	14-1	22,854.0	감) 12.2	22,841.8	82.0	공동주택
	14-2	101.0	증) 56.2	157.2	0.6	공공청사

(2) 용도지역 변경계획

– 신길14구역 측량결과 반영 및 서울시 재정비 위원회 자문결과 반영

구 분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율 (%)
합 계	27,848.0	감) 4.0	27,844.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1,873.0	증) 5,971.0	27,844.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5,975.0	감) 5,975.0	–	–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①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위치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1	53	35	간선도로	1,550 (591)	문래동광장 (신길동 395-1)	신길동광장 (신길동 342-89)	일반도로		건고393 (78.12.7)	도림로
기정	중로	3	63	12~18	집산도로	268 (240)	신길동 335-17 (신길동 335-2)	신길동 342-88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 (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②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4	-	소공원	신길동 335-34 일대	2,004.0 (1,735.0)	감) 2.1	2,001.9 (1,732.9)	서고445 (07.11.29)	-

※ (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③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9 일대	1,295.0 (1,108.0)	감) 45.5	1,249.5 (1,062.5)	서고445 (07.11.29)	-

※ (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④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	신길동 349-3 일대	101.0	감) 56.2	157.2	서고445 (07.11.29)	파출소

※ (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길14 재정비촉진구역	62,696	-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57-26번지 일대	411	-	-	411	-	-

②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명칭	구역구분 면적(㎡)	가구 또는 획지 구분 명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면적(㎡)	위치	주1)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평균층수/최고층수
기정	신길14 재정비 촉진구역	27,848.0	14-1	22,854.0	영등포구 신길동 347-50번지 일대	52,315.09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18.87	228.91	20 / 26
			14-2	101.0	영등포구 신길동 349-3번지 일대	202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주민센터)	60%이하	200%이하	-
변경	신길14 재정비 촉진구역	27,844.0	14-1	22,841.8	영등포구 신길동 347-50번지 일대	57,748.66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19.41	252.82	22 / 28
			14-2	157.2	영등포구 신길동 349-3번지 일대	310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주민센터)	60%이하	20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합계	분양(전용면적, ㎡)				임대(전용면적, ㎡)			
			소계	109.50	84.94	59.95	소계	39.98	49.70	59.95
세대수	기정	475	389	141	190	58	86	36	36	14
	변경	573	467	92	190	185	106	44	46	16
비율	기정	100.00	81.89	29.68	40.00	12.21	18.11	7.58	7.58	2.95
	변경	100.00	81.50	16.06	33.16	32.28	18.50	7.68	8.03	2.79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6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 이상
- 임대주택 건립비율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길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주1)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기준용적률 20%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부분은 주택규모 60㎡(전용면적) 이하로 건설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름)

3.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의 필요성

○ 신길14구역 일대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임.

○ 따라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기준용적률 20%을 통하여 소형주택을 확대 공급을 토하여 서민 주거안정 및 원활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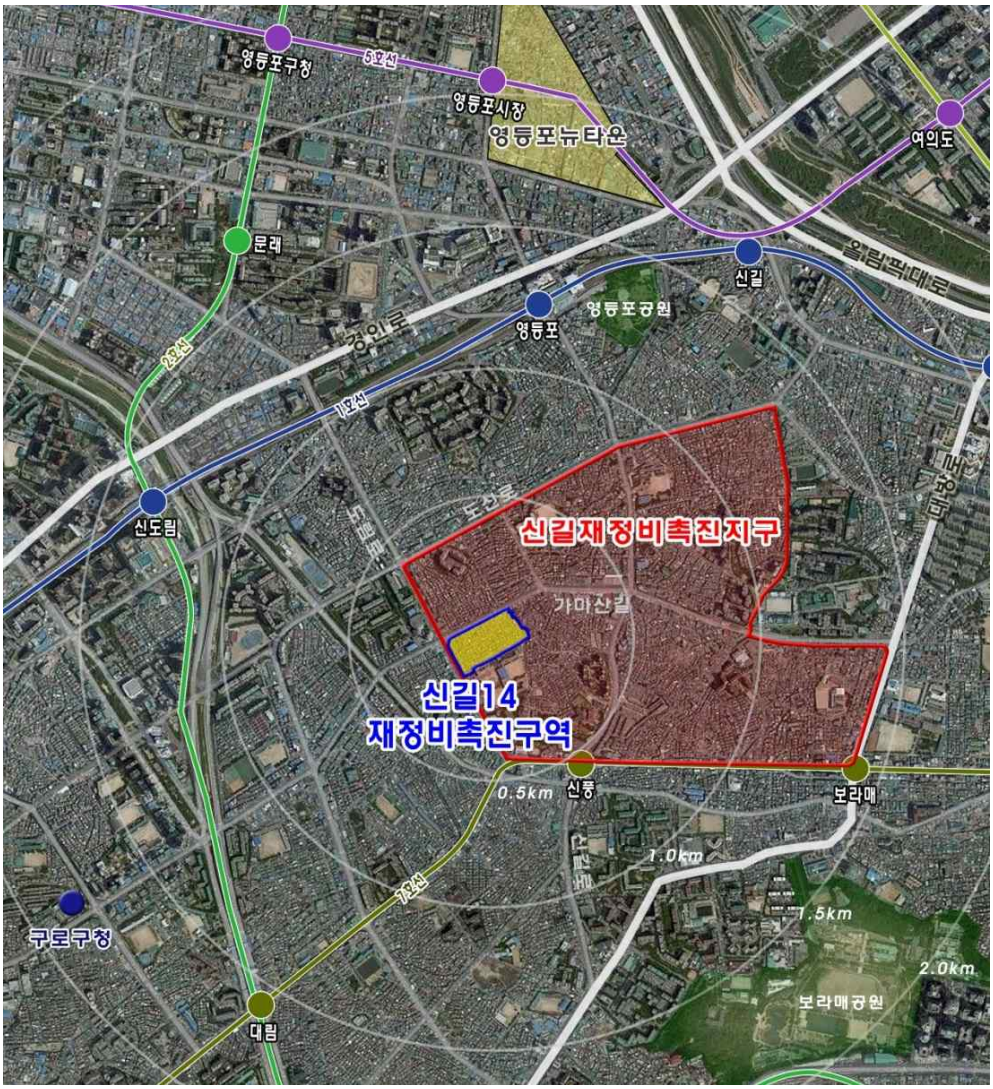
4. 추 진 경 위

○ 2005. 12. 16 : 신길뉴타운 지구지정 고시
○ 2006. 10. 19 : 신길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시범지구 선정
○ 2007. 11. 29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지정고시
○ 2009. 08. 13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신길11구역
○ 2009. 09. 10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신길7구역
○ 2010. 01. 17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신길12구역
○ 2010. 04. 08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신길3구역
○ 2010. 07. 15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신길5구역
○ 2011. 04. 14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신길8구역
○ 2010. 05. 19 :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
○ 2011. 04. 12 :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영등포구 사업협의회 자문(총괄MP 및 자문MP 자문)
○ 2011. 05. 16 :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2011. 06. 14 :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도시재정비 본위원회 자문
○ 2011. 06. ~ :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민공람

5. 우리구 의견

○ 신길14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역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통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 치 도


영등포구청
5호선
영등포시장
영등포뉴타운
여의도
문래
신길
여의대로
영등포
영등포공원
경인로
2호선
1호선
신도림
도림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가마산길
신길14
재정비촉진구역
0.5km
신풍
보라매
1.0km
1.5km
2.0km
보라매공원
구로구청
대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1-559호

영등포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결신청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9-1호 일대 『영등포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사무실(☎ 2670-3536~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오니 해당 물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우리 구(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열람기간 : 2011.6.23. ~ 2011.7.8.(15일간)
2.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사무실 [보건소6층, 전화번호 : 02)2670-3539]
3. 재결신청 요지
   가. 사업명칭 : 영등포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사업주체 : 영등포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안병조
   다. 사업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9-1호 일대
   라. 사업의 편입 토지 및 물건(영업권)의 권리명세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상 호	구조 및 규격	수량	관 계 인			비 고
	동명	지번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영등포동 7가	31-1	영업보상	럭키다방	철콘/ 슬라브	1식	강명해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31-1번지 지하1층	영업권	

   마.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 공람장소 비치

인사발령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육아휴직)

<발령번호 : 제78호>

일련번호	성 명	제청			현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최 연 옥 (74.04.12)	행정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1.06.20부터 2012.06.19까지)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주사보

(발령연월일 : 2011년 06월 20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육아휴직)

<발령번호 : 제79호>

일련번호	성 명	제청			현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오 석 (77.01.28)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1.06.22부터 2012.01.09까지)			행정국		지방행정주사보

(발령연월일 : 2011년 06월 22일자)